

제 호			
납부고지 정정통지서			
납부의무자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		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정정통지의 내용	부과 대상 건축물		
	당초 고지내용	정정내용	이유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납부 고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고지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 통지합 니다. 년 월 일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· 군수 직인			